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가요?

정리_김하나(한국제품안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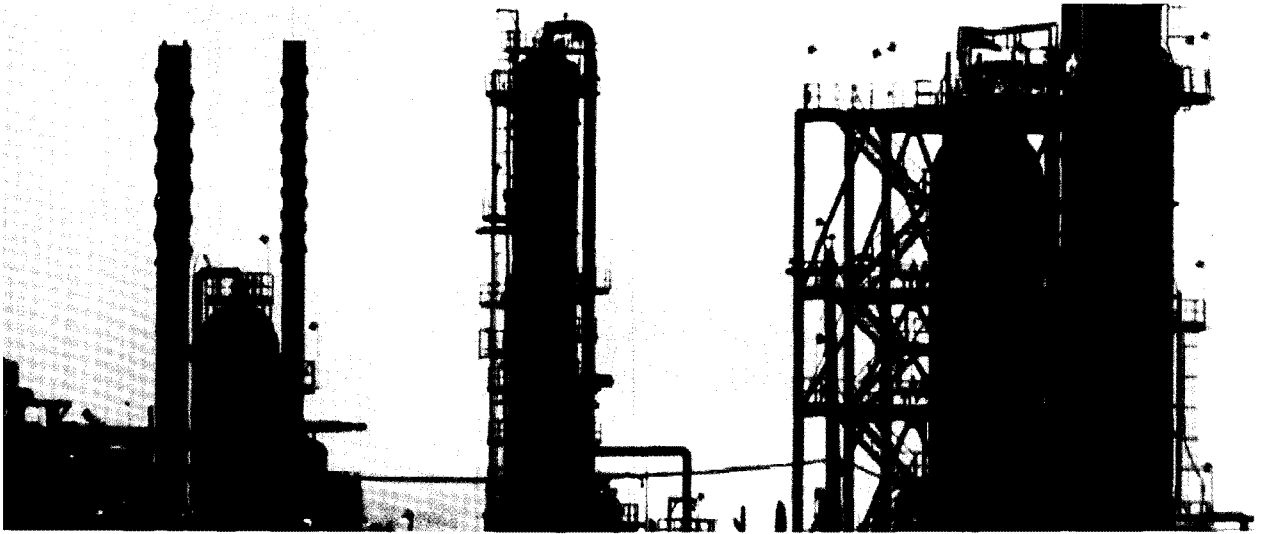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를 매스컴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약 2008년 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 유럽은 이보다 3~4년 전에 시작되었고, 일본은 1년 정도 앞선 2007년의 후반 경 이라고 합니다. 물론 온난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시점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비슷했을지 모르나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국민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은 정보를 공급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난화에 대한 정보의 전달 시점이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난화 문제는 정치가나

정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온난화에 대한 많은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국민이나 사회단체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대책을 고민하여, 이를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생활속에 정착해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구조나 국민의식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치 홍수가 지나간 것 같이 급격한 관심 후 조용해 지는 상황이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접고 진정한 지구와 인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개요

탄소배출권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평균 5%를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서로 거래하는 형태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의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래가 비즈니스로 성립되면 기업이나 정부 쌍방으로 경제효과, 환경효과가 나타납니다.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유엔이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줍니다. 기업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돈을 번다는 의미로, 현재 유엔에 등록돼 있는 CDM사업은 모두 2129건이며, 우리나라는 37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에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대상, 방법 및 검증 등의 설계 방안을 연구해서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출감축 의무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EU)회원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38개국입니다. 이들 나라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의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정부는 선진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조처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할당 대상을 산업, 발전, 상업, 수송, 가정 중 산업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에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사실 돈으로 사고 팔만한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위적으로 매매 가능한 거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시장설계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탄소배출권거래와 무선통신을 위한 전파거래(또는 전파경매)입니다. 이런 시장을 만들 때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시장이 단기간에 파괴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설될 탄소배출권 시장은 디자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국의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고 신종 이론이나 지식들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거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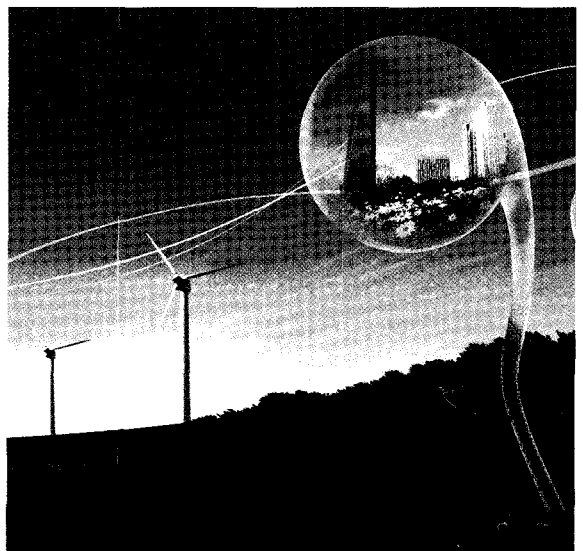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탄소배출권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다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지정된 양을 초과 배출한 기업은 벌금 혹은 타기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므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정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탄소배출이 돈의 낭비이므로 결국 돈이 있고 기술이 뛰어나 기업은 탄소저감 설비를 갖추고 감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신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이 발전하여 고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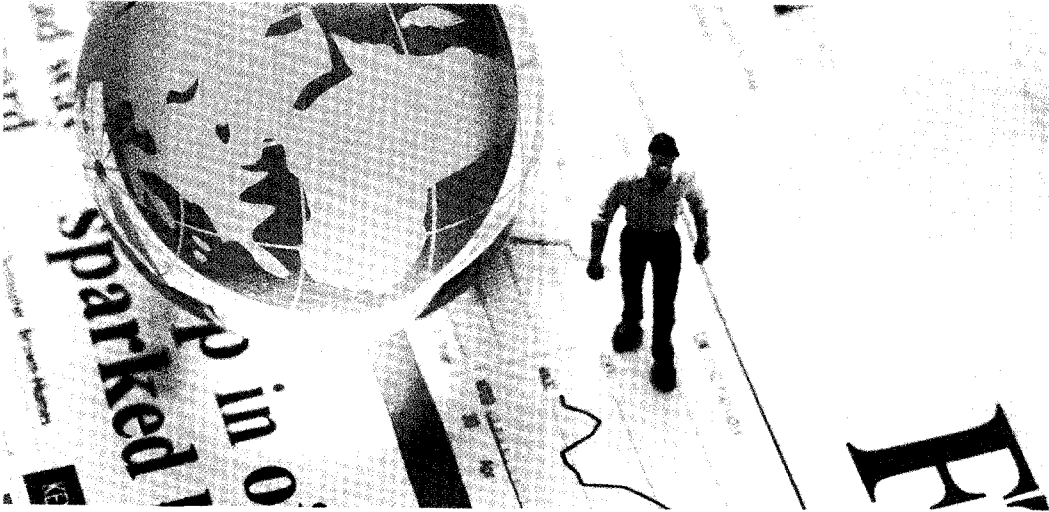
기업은 배출권 시세와 직접투자 비용을 비교해 보다 경제적인 온실가스 절감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연스런 거래

가 가능해지고 거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사업장도 필요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가 직접투자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또한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판매에서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총배출량의 설정에서부터 기업·사업장당 세부적인 할당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배출권이 바로 돈이라는 점에서 할당작업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방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기업이 배출권을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유상경매 방식과 정부가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도 1기에서 무상 분배 방식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바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된 '횡재이윤'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것보다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6억80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과다 할당의 주요 원인은 배출 총량을 산정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았다는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과도한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 가격 하락을 불러 일으켜 배출권의 거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EU-ETS 3단계부터 필요한 배출권을 국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유상 경매 방식을 주된 할당방식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상 경매 방식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무상 경매 방식에 비해 우월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유상 경매를 하게 되면 국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탈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세밀한 총량 설정과 업종에 맞는 할당방식 선택에 충분한 합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예민한 사안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행했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국가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주와 영국은 조기감축 대상 및 인정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행동을 검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세계 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시장은 선진 38개국들이 교토의정서에 서 허락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이래 서유럽 거의 전역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암스테르담에 개설되어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입니다. 유럽의 거대 금융 그룹들은 모두 탄소배출권 전문 트레이더나 전문 펀드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을 내세웠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와 연계한 CDM사업이 각 기업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연구개발(R&D) 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지역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의 확보는 정부, 기업 및 가계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2012년까지 2억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조립 활성화로 목재 공급원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하는 것은 녹색기업 활동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2050



년까지 100만ha의 해외 조립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확보한 40만ha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해 우리 기업의 해외 조립 진출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돕고 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열어 대외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배출권 대책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입법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가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계 각국이 명운을 걸고 대응하는 긴급한 국가적 현안이고,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녹색법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환경 관련 부서가 맡는 것이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총괄을 하면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자력산업 육성, 4대강 정비산업, 물산업 육성·지원 등은 녹색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우여곡절 끝에 2009년 말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시행령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두고 산업계는 감축목표가 너무 높다는 것을 호소하고, 반면 사회시민단체는 산업계 부담을 너무 적게 지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행령안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관리라는 형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경쟁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2010년 말경 연말 탄소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에 매연저감장치 생산업체 등이 각광을 받을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주관기관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가 물망에 올랐으며, 모두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배출권거래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 온실가스 중 발전부문에서만 26%가 배출된다는 이유로 탄소배출권거래기관은 전력거래소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기관이 전력거래소든, 한국거래소든, 상품거래소든 탄소배출권은 거래될 것입니다.